### 2024년 하반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신청 안내문

### 1.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

○ "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"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**학예실무에 종사**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.

등 급	구 분	자 격 요 건			
1급 정학예사	▶ 2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 <sup>주1</sup> 이 7년 이상				
2급 정학예사	승급	▶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이 5년 이상			
3급		▶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이 4년 이상			
정학예사		▶ 박사학위 취득자로 <b>경력인정대상기관<sup>주2</sup> 실무경력<sup>주3</sup>이</b> 1년 이상			
	_	▶ 석사학위 취득자로 <b>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</b> 이 2년 이상			
	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학사학위 이상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			
준학예사	신규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<b>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</b> 2년 이상			
	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2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<b>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</b> 3년 이상			
		▶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미소지자로 준학예사 시험 합격,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			

[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(학예사 자격요건 등) 참조]

- **주1** 승급 신청 시 필요한 재직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과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학예 근무경력을 말합니다.
- ※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시설에서의 학예실무경력만을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 및 승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합니다.
- 주2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① 등록된 국·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
  - ② 등록된 사립·대학 박물관·미술관 중 인력·시설·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을 실사하여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(http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content/career\_accreditation 참조)
- ※ 경력인정대상기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력 인정 여부는 본관과 별도로「박물관·미술관 진흥법」제 5조에 의거하여 박물관·미술관으로 등록한 시설에 한해 인정합니다.(2026년 상반기 심의 적용)
- 주3 신규 취득 시 요구되는 실무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경력을 말합니다.

## 2. 제출 서류

○ 신청서류는 신청하려는 학예사의 급수와 승급을 희망하는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.

구분	내 용
신규 (정 3급)	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 4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(석·박사학위 소지자) 5. 최종학교 학위논문 표지·목차 사본(석·박사학위 소지자) ※ 국외학위 취득자는 조회 신청서,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※ 논문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, 관련 학칙을 제출해야 함 6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의 원본 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)이 기재돼야 함 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기재해야 함 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함 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 ※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급여내역(은행 발급) 제출
신 규 (준학예사)	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 4. 준학예사 시험 합격증 또는 합격 확인서의 사본(90일 이내 발급분) 5.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증 사본 ※ 국외학위 취득자는 조회 신청서,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6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의 원본 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)이 기재돼야 함 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기재해야 함 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함 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※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 ※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급여내역(은행 발급) 제출 8. 학예실무증빙자료(3쪽 <표 1> 참조)

구분	내 용
	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	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	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
	4. 취득한 학예사 자격증(준학예사 / 정학예사 3급 / 정학예사 2급)의 사본
	5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의 원본
승 급 ·준 →정3급	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)이 기재돼야 함
·정3급→정2급	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
│ ·정2급→정1급	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
	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
	6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
	※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
	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
	7. 학예실무증빙자료(3쪽 <표 1> 참조)

### <표 1>

## 경력과 학예실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종류

구분	종 류
	○ 박물관·미술관 소속 경력의 증빙자료
74 24	- 국·공·사립·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원본
경력	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
증빙	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)이 기재돼야 함
자료	- 건강보험(직장가입자)자격득실확인서 원본(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재직·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)
	※ 재단, 협회 등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
	경력인정대상기관과 위탁 운영 주체와의 관계 증빙자료 사본(공문, 계약서 등) 제출
	○ 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실무(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
	연구·전시·교육)를 이행한 증빙자료
	- 박물관의 학예실무로 생산한 도록, 보고서, 활동지, 교재, 리플릿 등의 인쇄자료 사본
	* 표지·목차·판권 및 신청자 이름이 명기된 부분의 사본( <b>도록·보고서 등 책자 원본은 접수 불가)</b>
	- 신청자가 작성한 등록카드, 처리카드 등 소장품 관리 및 보존처리 관련 증빙자료의 사
학예	본(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
실무	※ 신청자가 학예실무를 증빙할 자료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, 아래 증빙
증빙	서류 제출 가능
	① 신청자가 생산한 공문서(기획안, 결과보고서 등 붙임 자료 포함)의 사본
자료   	② 신청자가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운영 기획(안) 및 결과보고 등의 사본
	③ 신청자가 학예실무를 담당하였음이 명기된 공문, 업무분장표의 사본
	④ 근무일지 또는 월별업무보고서의 사본(월 1장씩, 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
	⑤ 근무기간(실습기간) 동안의 업무보고서 또는 교육실습보고서의 사본(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
	※ 위의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경력기간 동안 학예실무를 주요 업무로
	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<sup>※</sup> 신청자는 위의 경력 증빙자료 및 학예실무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출하기 바랍니다. 심사 준비과정에서 필요 시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신청 및 제출

○ 신청장소 : <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 (www.museum.go.kr/curator)

○ 신청방법 : 「2024년 하반기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신청 안내서」참조

○ 신청기간 : 2024. 7. 29.(월) 9:00 ~ 8. 19.(월) 18:00 / 22일간

※ 신청 마감일인 8. 19.(월)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누리집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 O 신청순서

- ① 인터넷 신청(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)
- ② 신청서류 출력(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증빙자료 목록 등)
- ③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(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) ※ 택배 접수 불가 ※ 서류 및 증빙자료 미비 시 불인정 될 수 있으며, 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
### ○ 제출방법

① 등기우편

· 제출기간 : 2024. 7. 29.(월) 9:00 ~ 8. 19.(월) / 22일간 ※ 2024. 8. 19.(월) 등기 소인까지 인정

· 우 송 처 : (04383)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사자격증·경력인정대상기관 담당자 앞

② 방문

· 제출기간: 2024. 8. 19.(월), 9:00~18:00 / 1일간

· 제 출 처 :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브리핑룸

(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내외)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### 4.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<<u>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 신청 내용과 우편</u> <u>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내용이 일치</u>해야 합니다.
-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)를 반드시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**합니다.
- 등급별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, 적합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.(학예실무 인정분야는 <표 2> 참조)
-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근무여부 및 경력기간, 학예실무 등의 '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'이 입증돼야 합니다.(증빙자료는 <표 1> 참조)
- 학예실무 경력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에는 모든 근무 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.

- <u>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도록·보고서·활동지·리플릿·공문서 등의 사본에는 신청자</u> 본인의 이름, 업무, 발간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.
  - **도록·보고서 등 책자의 원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.** 표지·목차·판권 등 필요 부분만 복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.
- 도록, 보고서, 리플릿 등의 인쇄물을 제외한 근무일지·공문 등의 증빙자료는 원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(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, 관인 날인 필수)
  - 공문은 본문과 붙임은 하나의 문서임을 증빙해야 하며, 공문의 본문 없이 붙임만 제출한 경우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  - 확인이 필요한 원본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자료 뒷면이 보이도록 앞으로 접어 가장자리가 비스듬히 겹쳐지는 부분(자료가 두꺼운 경우는 측면)에 관인을 날인하여 한 묶음임을 증명한 뒤 제출하기 바랍니다.
- 같은 종류의 증빙자료는 클립 또는 집게로 편철하고, **클리어파일 및 바인더는 모 두 폐기되니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.**
- <u>증빙자료 중 PPT, 인터넷 게재글(블로그, 카페글 등), 사진 등 개인이 임의로</u> 작성 편집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참고사항
  - [붙임1] 학예사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- [붙임2] 학예사 자격증 신청 우편봉투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- 경력기간의 산출은 2024. 8. 19.(월)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-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송합니다. ※ 2024. 8. 19.(월) 등기 소인까지 접수합니다.
  - 접수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- 제출한 서류(신청서, 재직·경력증명서, 실무경력확인서, 증빙자료)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학예사 자격 부결 및 취소 처분과 함께 공·사문서 위조·변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박물관·미술관 경력 기간 중 겸직 사례가 있는 경우, 출력한 신청서 하단에 해당 사실을 별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(출강경력 제외) 겸직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기간을 조정하여 인정합니다.
    - 예) 대학교수의 박물관장 겸직 시 전체 경력의 40% 인정

### 5. 자격요건 심사 및 결과 발표

-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심사 : 2024. 10. 14.(월) ~ 10. 18.(금) 중
- 결과 발표 : 2024. 10. 25.(금) / 18:00
- 결과 확인 : <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
  - ※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(☎ 02-2077-9531, 9544)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.

#### <丑 2>

### 학예사 자격증의 학예실무 인정 및 제외분야

구분	내용
	■ 박물관·미술관의 전시, 조사, 연구, 자료수집, 소장품 등록·관리·복제·보존처
인	리, 교육, 전시 공간디자인 등 학예분야 업무
_	■ 박물관, 미술관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학술연구
정	※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을 경우 소속 기관의 학술 업무로
	진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- 바므과 미스과의 하에서므로 스바하 가족 가해모/저지도로 되고나 연구나
분	<ul> <li>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실무를 수반한 각종 간행물(전시도록, 보고서, 연구서, 교육교재, 소책자, 리플릿 등)의 발간</li> </ul>
프	■ 학예실무 관련 정규 프로그램 실습연수과정, 인턴과정
O‡	- ¬에르 1 년년 8 11
OF	(경력인정대상기관 현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(www.museum.go.kr) 내「소식·참여」→
	「학예사자격증 안내」참조)
	■ 일반 행정 분야 : 예산, 감사, 평가, 행정지원, 관리, 방호, 서무, 총괄 등
	■ 전시실 작품관리원(방호업무)
	■ 도슨트(전시해설사), 교육 강사, 단순 업무(시설 안내, 전시장 지킴이, 자원봉사,
	재능기부 등), 학예업무가 수반되지 않은 홍보(마케팅) 및 출판
제	■ 학부 재학 중 경력(재학 중 발굴조사 참여 경력 등)
	■ 박물관·미술관이 아닌 조직 및 기관에서의 경력(비엔날레조직위원회, 문화재단,
외	박물관 건립 TF, 추진단 등) - 바무과 미소과 자연이 이나면 여기로 무져오고 바무과 미소과가 오여게야요 매그
	<ul> <li>박물관·미술관 직원이 아니며, 영리를 목적으로 박물관·미술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한 경력(1인 기업, 프로젝트 포함), 프리랜서</li> </ul>
분	■ 학예직이 아닌 행정직 등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학예실무를 수행한 경력
	■ 대학교 행정조교, 학과조교
O‡	■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(보험 미가입 및 단기 시간제 근무)
	■ 무급으로 수행한 경력(급여 미지급, 보험 미가입)
	■ 2개 이상의 기관에 근무기간 중복으로 학예실무를 한 경우
	※ 이 외에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소속 근무경력이 아니거나 직접 학예실무를
	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
<sup>※</sup> 학예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내용·경력 등의 인정여부 및 겸직 근무경력의 재산정 비율은 "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"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.

<sup>※</sup>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 여부, 급여 증빙자료 제출 필요

## 학예사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총괄표

성 명	생 년 월 일	신청 급수

## ■ 필수 제출 서류

п =	제출 여부(체크)					
목록	1급 승급	2급 승급	3급 승급	3급 신규	준학예사 신규	
① 학예사 자격증 신청서 (신청 누리집 작성 후 출력)						
② 증빙자료 목록 (신청 누리집 작성 후 출력)						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자필 서명)						
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(준학예사 자격증 신청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 졸업증명서)						
⑤ 최종학교 학위논문 표지·목차 사본 (석·박사 학위 소지자)						
⑥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원본 (6개월 이내 발급분)						
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(6개월 이내 발급분, 경력증명서 상의 모든 기간 포함)						
⑧ 학예실무증빙자료(전시도록, 활동지, 유물명세서 등)						
<ul><li>⑨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확인서 사본</li><li>(90일 이내 발급분,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)</li></ul>						
⑩ 정2급 학예사 자격증 사본						
⑪ 정3급 학예사 자격증 사본						
⑫ 준학예사 자격증 사본						

- \* 본인 신청 급수에 맞게 제출 여부 란에 "○"표시, 위 순서대로 제출.
- \* 신청 급수별 필수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 있음.
- \* 제출 서류의 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.

		학예사자격증 신청서류 재중	<b>₹</b>	보내는 사람
0 4 3 8 3	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사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담당자	받는 사람	신청급수 :	접수먼쇼 :

### 2024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안내문

### 1. 경력인정대상기관 요건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의해 <u>'박물관·미술관'으로</u> 등록된 사립·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인력·시설·자료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사업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한 기관
- 등록 이후 2년 이상 운영 기관
- O 관장, 직원 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가 2인 이상 상주 근무
  - ※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등록 기관 근무경력 6개월 이상 필요 [신청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3개월 이상 필수]

### 2. 신청 및 제출방법

- 신청장소 : <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 (www.museum.go.kr/curator)
- 신청기간 : 2024. 7. 29.(월) 9:00 ~ 8. 19.(월) 18:00 / 22일간
  - ※ 신청마감일인 8. 19.(월)에는 신청자(기관)가 급증하여 누리집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O 신청순서
  - ① 인터넷 신청(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)
  - ② 신청서류 출력(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증빙자료 목록 등)
  - ③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(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)
  - ※ 서류 및 증빙자료 미비 시 불인정 될 수 있으며, 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- 제출방법
  - ① 등기우편
    - · 제출기간 : 2024. 7. 29.(월) 9:00 ~ 8. 19.(월) / 22일간 ※ 2024. 8. 19.(월) 등기 소인까지 인정
    - · 우 송 처 : (04383)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사자격증·경력인정대상기관 담당자 앞
  - ② 방문
    - · 제출기간: 2024. 8. 19.(월), 9:00~18:00 / 1일간
    - ·제 출 처 :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브리핑룸 (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내외)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### 3. 제출 서류

#### ▶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

- 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- 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-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
  - ※ 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된 전문 인력 모두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(동의서 각각 본인 자필 서명)
- 4.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의 사본 ※ 사업자등록증 불인정
- 5. 직원 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
- 6. 직원 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기관별 재직·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
  - ※ 경력인정대상 신청 기관 발급본, 이전 근무기관(6개월) 발급본
- 7. 건강보험(직장가입자) 자격득실확인서 원본
  - ※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의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재직·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
  -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
- 8.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업무실적 현황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
  - 소장품·상설전시·특별전시 도록, 연구 보고서,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, 리플릿, 상설전시 여부 등
  - ※ 사본 제출 시, [원본대조필]과 기관 날인 필수
  - ※ 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
- 9. 2024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계획(지정양식)
- ※ 신청기관은 위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출하기 바랍니다. 심사 준비과정에서 필요 시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

- <<u>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 신청 내용과</u>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.
-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)를 반드시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**합니다.
-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송합니다.
  - ※ 2024. 8. 19.(월) 등기 소인까지 접수합니다.
- 접수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한 서류(신청서, 학예사 자격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·경력 증명서, 증빙자료 등)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부결 및 취소 처분과 함께 공·사문서 위조·변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5. 자격요건 심사 및 결과 발표

-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심사 : 2024. 10. 14.(월) ~ 10. 18.(금) 중
- 결과 발표 : 2024. 10. 25.(금) / 18:00
- 결과 확인 : <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
  - ※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(☎ 02-2077-9531, 9544)로 문의하기 바랍니다.

# ○○관 2024년 운영계획(안)

Ш	구군/사업명						
0	개요:						
0	기간:						
0	내용						
	-						
	-						
·	- 소요예산:						
O	그 끄 에 다.						
	구분/사업명						
0	개요:						
	 기간:						
	내용						
	-						
•	-						
	-						
O	소요예산:						
	구분/사업명						
0	개요:						
	기간:						
	내용						
	_						
	-						
	-						
0	소요예산:						
<b>※</b>	구분: 소장품,	보존처리.	학술연구.	전시.	교육,	인턴실습	등
•	/	— ' '/	. — — . ,	— :/	• /		_